

인터넷 제공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유통 실태

- 인터넷을 통한 대중문화의 확산과 인터넷 음란정보·채팅·커뮤니티 등 -
전병화(정보통신윤리위원회)

I. 들어가는 말

우리 삶은 네트워크 혁명으로 불리는 인터넷이 음란물의 파도에 휩싸인 정보의 바다라고 생각할 때면 암울한 심정이 든다. 그만큼 정보가 차고 넘치기도 하지만 음란정보에 노출이 심하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시설만 갖추면 인터넷을 통하여 수시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신하고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 역기능적 측면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이 갖는 익명성과 통제불능한 신속전파성으로 불법정보 내지 음란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최근 범람하고 있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까지 범죄, 음란물, 불건전정보들의 온상이 방치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것을 보면 때론 우리 시대는 소동과 고모라 못지 않는 그러면서 바벨탑을 재현하여 구약시대를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인터넷은 죄악된 삶, 음란의 파도를 일으키는 매체에 초점을 맞추면 어둠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 전파의 매체로 사용될 경우 빛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II. 인터넷상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최근 인터넷을 통해 검색, 폰섹, 번섹 등의 언어가 성행하고, 사이버 공간의 음란사이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도메인포워딩을 통한 연결망을 통해 음란정보가 보여 주기도 하고, 팝업(pop-up)창을 통해 인터넷 악성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이용 종료시 원하지 않는 다른 불법·청소년유해 사이트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창이 계속 생성되어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고, 청소년들이 선정적이고 음란한 초기화면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사이트 운영자간 파트너 제휴를 통하여 상호 사이트를 생성해주거나, 이용 종료시 포워딩(forwarding)을 시키고 있으며, 도메인 사용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도메인을 확보하여 각종 불법·청소년유해 사이트를 포워딩 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료 계정을 이용해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음란·와레즈 사이트를 전파하는 등 클로징 팝업(Closing Popup) 광고²⁾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근거하여 인터넷의 역기능 현상을 해소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올바른 전기통신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법·청소년유해 정보에 대하여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으며, 정보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사업자·민간단체 등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 또한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와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2002.12.26 개정)에서는 불법통신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두고 있다.

- ①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③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④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⑤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⑥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⑦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⑧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⑨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결국,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은 ① 음란, ② 명예훼손, ③ 스토킹, ④ 해킹 등, ⑤ 청소년보호위반, ⑥ 사행행위, ⑦ 국가안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음란정보를 불법 제작하여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전자우편, 모바일, 커뮤니티 사이트 등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배포·판매하거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물을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간과하여서는 안 될 정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음란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녀 및 동성간의 성행위나 자위행위, 배뇨 및 배변행위를 묘사하는 사진이나 그림, 10세 안팎의 어린이나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 나신·성행위 등 관련 자료를 사진 등 정지영상이나 동영상으로 제작한 아동포르노와 강간장면, 수간,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의 지나친 노출 등이 있으며 그 심각성이 대단하다.

또한 이러한 음란정보는 그 유통형태 및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문자(음란게시글, 음란소설 등), 영상(사진, 그림, 만화, 애플릿 등), 음란동영상, 음란게임, 음란채팅, 음란사이트 배너광고, 음란물 판매광고 등이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웹사이트, 모바일, 위성통신 등을 통하여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음란정보는 성인뿐만 아니라 10세 안팎의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도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고, 심지어 음란 홈페이지를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 등의 미성년자가 직접 유료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과거 현실세계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던 음란영화나 사진들이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상 유통되는 음란성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21조(선량한 풍속 저해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

1.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일반인의 공분(公憤)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정보

2) 클로징 팝업(Closing Popup) 광고란 화면을 닫고 나서 뜨는 팝업 광고창을 말하며, 이의 양산은 'woto'와 'yero' 'dkky' 'opto' 등 무료 국내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다. 항문성교, 구강성교, 성기에무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한 내용

라. 남녀의 성기 등에 대한 자위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성행위와 관련된 기성 등 신음소리를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된 내용

바.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변태적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사.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성적 표현을 통하여 성적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강간, 윤간, 성고문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나. 존속, 노인, 스승에 대한 살상(殺傷), 폭행, 협박, 학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본인(本人), 아동, 부녀, 장애인 등에 대한 살상(殺傷), 폭행, 협박, 학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라.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마. 낙태, 절개·절단, 수술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바. 출산상황을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사. 육설, 성기명칭 등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아. 기타 육체적·정신적 고통, 살상, 사체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음란’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저속’은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적인 보호 영역안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속’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정도로 추상적이다.

음란성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는 먼저, ‘마야판결(대판 1970. 10. 30. 70도1879)’에서 볼 수 있는데, 음란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의 경향과 관련하여 출발점이 되고 있는 판결로서 고야의 명화 ‘나체의 마야’를 인쇄하여 성냥갑 속에 넣어서 판매한 것이 음화제조판매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소된 사건이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예술·문학·교육 등 공공의 목적이 아닌 ‘영리의 목적’이 음란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즐거운사라판결(대판 1987. 12. 22. 87도2331)’에서는 기존의 음란개념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음란한 문서’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며 문서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여러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당해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 서술이 문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 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등 앞에서 제시하는 기준들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상의 성적표현 또는 음란표현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제방식은 크게 음란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명령에 의한 통제로 구분된다. 인터넷상 음란정보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규로는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윤리행위방지법 등이 있다.

형법상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형법 제243조에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음란물에 대하여 앞에서와 같이 규제하고 있으나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은 유체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의 전자적 음란정보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 다만, ‘음란’의 개념을 확정함에 있어 판단준거로 작용할 수는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를 삭제하고 신설한 규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를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금지시키고 있다.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규제대책으로 나온 것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법 제71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음란정보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i) 성행위는 이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에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 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 전라의 뒤엀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있는

체위를 구체적으로 묘사, 착의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이다.

ii) 누드는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은 불법이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세,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 노출한 내용 등이다.

iii) 성매매는 인터넷상에서 일명 '사이버 매춘'으로 불리우며, 사이버 매춘은 원조교제, 스와핑, 번섹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인터넷 화상채팅 및 커뮤니티 형식의 동호회, 화상전화방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불건전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 성매매의 유형은 스와핑-부부나 혹은 커플이 섹스 파트너를 구하는 것으로 반드시 파트너가 있는 상대와 만남을 주선하며 자신들의 경험담을 들어 만남을 원하는 내용을 피력하고 있다(예 : “섹에 즐거움을 느끼는 부부 원해요”, “스와핑 원해요...여자친구의 밤일은 제가 보장합니다.”, “제 와이프에게 다른 남자를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원조교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를 통한 매춘을 하는 행위이다(예 : “용돈이나 벌라하고 원조교제 할려고 합니다.”, “원조녀 구함”, “자기 소개를 하고 원하는 액수를 적으세요”). 번섹은 동호회의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채팅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 스팸메일의 형식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상대를 구하는 형식도 있다(예 : “번섹, 빠구리할 여 구함”, “한판하자. 잘 뽑아줄게!”, “우리의 free한 sex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상채팅을 사용한 매춘행위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알몸을 공개하거나 문자나 음성 등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자극을 주어서 성관계를 갖게끔 유도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매춘행위를 위해 알선지역을 직접 찾지 않아도 감상 후 매춘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휴대폰 등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사용으로 게시판이나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조교제나 매매춘이 가능하다. 공개 및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매춘행위는 대화방을 개설하여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통해 만남을 가지거나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이루어진다. 특징은 장소, 신상, 금전 부분 등 여러 면에서 미리 적정선에서 타협을 볼 수 있는 편이가 따르며, 다른 수단과 마찬가지로 노출부분의 보안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매춘이 가능하다. 메일서비스 등을 통한 매춘광고행위는 메신저 서비스나 메일서비스의 부가기능 경쟁으로 인해 메일 서비스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순위위침에 따라 매치메일³⁾ 등과 같은 메일 서비스들을 사용하여 매춘을 하려는 본인의 정보를 매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발송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시키며 익명성이나 개인정보가 보장되므로 노출의 위험도 적다. 이것의 특징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직접 연결해주기 때문에 매춘관련 정보들을 손쉽게 모을 수가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매춘이 가능하다. 전화(화상)데이트방은 2000년 일반 성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으로 전화방 혹은 휴게방으로 알려진 특정장소에서 화상을

통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은 후 마음이 맞으면 만나서 매춘행위를 가지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방식으로 직접 장소를 찾는 것은 같으나 매춘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과도 매춘이 가능 업소별로 다양한 형태의 편안함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

iv) '아동포르노(폴리타)사이트'는 10세 안팎의 어린이나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 나신, 성행위 등 관련 자료를 사진 등 정지영상이나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이를 게시·전송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v) '수간'이라 함은 개나 말 등과 같은 동물을 통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변태성행위의 일종이다.

vi) '스와핑'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교환하는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섹스 파트너를 맞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vii) '근친상간'은 인척간의 성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근친상간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21조에도 음란성의 기준으로서 근친상간을 들고 있다.

viii) 'SM'이라 함은 가학적 또는 피학적 성욕을 이르는 말로 sado-masochism의 준말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음란성 인터넷정보가 아닌 선정성 인터넷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는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이러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고 이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고시된 청소년유해정보는 표시의무, 포장의무, 표시·포장훼손금지의무, 청소년판매등 금지의무, 불표시·불포장 전시·진열금지의무, 구분·격리의무, 광고금지의무, 상대방 연령확인 등 청소년 제공금지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규정된 표시의무 및 상대방연령확인 등 청소년 제공금지의무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위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표시의무에 우선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체 전반에 적용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의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에 대하여 적용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유해정보는 넓은 의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⁴⁾에게 유

3) 원하는 정보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서로 조건이 맞는 정보들끼리 매치(Match) 시켜주는 메일서비스의 일종임. 자기소개와 함께 이상형에 관한 정보(지역, 취미, 외모, 비용부담 등)를 입력하면 조건에 해당되는 이성에게 메일이 자동적으로 전달되게 됨.

4)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함(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예를 들어, 2003년도의 경우 1985년 1월 1일생부터 보호대상 청소년에 해당함(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 제도'임).

해한 정보를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⁵⁾로 결정·고시한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반사회성을 띠는 영리·비영리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유해정보에는 청소년에게 성적·육구나 폭악성을 불러일으키는 정보,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으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며(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성의 판단은 전문적 심의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성·영상·문자정보에 대한 사후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8조). 참고로 청소년유해정보는 음성·영상·문자정보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 ‘음성’이란 신음소리, 괴성 등의 소리를 말하고, ‘영상’은 그림화면, 사진과 같은 정지화상 및 동영상상을 말하고, ‘문자’는 글자나 문장을 말한다. 그 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세칙 제2조 제1호에서는 ‘음성정보’의 개념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정보 중 음성저장장치 등을 통하여 음성을 저장·가공하여 제공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III. 인터넷 정보제공 유통실태

음란은 불법이다.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의 유통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통되는 음란물중 음란영상상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단순누드수준을 벗어나 성적 학대 등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내용이 갈수록 부가되고 있다.

음란정보의 유통되는 실태는 일부 국내에서 제공되는 청소년유해 사이트와 특히 해외에서 제공되는 불법음란사이트의 음란스팸메일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대화방에서 화상 채팅으로 노골적이고 음란한 내용이 그대로 유통되어 성매매의 온상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아동포르노,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음란물 유통과 관련되는 신기술의 꾸준한 등장으로 게시판, 팝폴더, 메신저서비스, P2P(Peer to Peer)프로 그램 등이 많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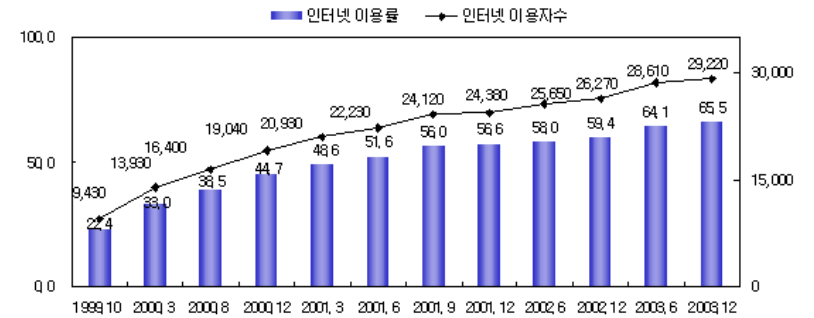
특히, P2P는 모든 가입자 개인 PC상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기술, 즉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는 자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의 PC를 직접 연결시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즉, P2P Service는 이용자간의 상호작용을 조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관리서버 없이 또는 단일한 관리서버를 통해서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분산컴퓨팅구조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한다. 중앙매개 관리서버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①Hybrid방식(중간매개 서버가 있는 경우)와 ②Pure방식 및 Freenet방식(개인

5)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각 심의 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보호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 중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최종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매체물.
- ※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정보 적용범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

PC가 서버역할을 대신하는 경우)으로 구분하며, 사용자끼리 서로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음악뿐만 아니라 동영상-mp3 음악파일, ‘야동(야한 동영상)’, ‘연예인 포르노 동영상’, ‘몰래카메라’ 등을 비롯한 음란 유통 경로로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웹서비스를 통한 음란정보의 유통이 되고 있다. 다음은 연도별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자 수 및 정보통신윤리 관련 인터넷상 음란·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실태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수】



※ 출처 : KRNIC, 「2003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2004

■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1995 - 200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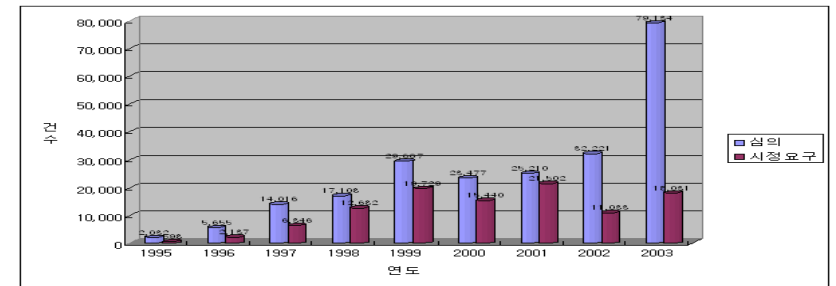
■ 연도별 심의 및 시정요구 실적(1995 - 2004. 9)

(단위 : 건)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9	합계
심의	2,032	5,655	14,016	17,108	29,607	23,477	25,210	32,221	79,134	54,129	282,589
시정요구	598	2,137	6,346	12,682	19,729	15,440	21,502	11,033	18,031	25,896	133,394

※ 2003. 6. 23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 실시

■ 연도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표(1995년 ~ 2003년)



※ 2002년~2003년 시정요구 건수가 타 연도에 비하여 적은 이유는 2002년 6월 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당일 이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된 2003년 6월 23일 까지 위원회의 시정요구 기능이 중지되었기 때문임

■최근 3년간 심의 및 시정요구 실적(2001 - 2004. 9) (단위 : 건)

구분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2001	25,210	21,502	7,085	5,323	5,080	4,014
2002	32,221	11,033	3,765	1,434	2,872	2,962
2003	79,134	18,031	7,103	5,054	2,227	3,647
2004.9	54,129	26,076	11,250	5,775	4,250	4,801
합계	190,694	76,642	29,203	17,586	14,429	15,424

■2004년도 심의 및 시정요구 실적(2004. 9) (단위 : 건)

구분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1월	2,410	1,165	250	384	217	314
2월	6,141	3,477	1,399	809	527	742
3월	7,386	3,252	1,494	657	674	427
4월	4,495	2,411	793	543	557	518
5월	6,094	4,287	2,763	767	510	247
6월	13,258	5,890	3,179	1,210	716	785
7월	3,624	1,826	419	537	356	514
8월	5,706	2,063	484	547	392	640
9월	5,015	1,705	469	321	301	614
10월						
11월						
12월						
합계	54,129	26,076	11,250	5,775	4,250	4,801

■2004년도 위반내용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2004. 1 - 9) (단위 : 건)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음란	44,656	21,357	7,606	4,838	4,196	4,717
명예훼손	704	408	290	102	16	0
폭력/잔혹/혐오	1,161	523	140	345	34	4
사행심조장	743	35	8	25	1	1
사회질서 위반	6,097	3,753	3,206	465	3	79
비심의대상	768	0	0	0	0	0
합계	54,129	26,076	11,250	5,775	4,250	4,801

■ 청소년유해정보 결정 및 고시 현황(1997 - 2004. 9) (단위 : 건)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9	합계
결정	607	755	90	95	400	816	3,524	5,835	12,122
취소	0	0	7	0	14	470	13	8	512

※ 2004. 8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고시번호 : 제2004-45호)까지 산정함

■ 2004년도 월별 청소년유해정보 결정 및 고시현황(2004. 9) (단위 : 건)

구분	고시현황		매체별			
			인터넷		PC통신	
	결정	취소	결정	취소	결정	취소
1월	133	1	133	1	0	0
2월	188	0	188	0	0	0
3월	448	0	448	0	0	0
4월	1,737	1	1,737	1	0	0
5월	254	1	254	1	0	0
6월	380	1	380	1	0	0
7월	35	0	35	0	0	0
8월	2,289	4	2,289	4	0	0
9월	371	0	371	0	0	0
10월						
11월						
12월						
합계	5,835	8	5,835	8	0	0

■ 해외 한글제공 도박 및 음란사이트 차단(2000 - 2004. 9)

■ 해외 한글 도박사이트 차단요청(2000 - 2004. 9) (단위 : 건)

구분	차단요청	
	도메인	IP
2000	12	12
2001	31	42
2002	38	83
2003	65	138
2004. 9	87	127

※ 해외 한글 도박사이트 차단 현황은 누계의 개념이 아닌 해당연도 또는 월별 차단 목록의 수를 의미함

■ 해외 한글 음란사이트 차단요청(2001 - 2004. 9) (단위 : 건)

구분	차단요청	
	도메인	IP
2001	9	16
2002	41	179
2003	440	629
2004. 9	267	364

※ 해외 한글 음란사이트 차단 현황은 누계의 개념이 아닌 해당연도 또는 월별 차단 목록의 수를 의미함

■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신고처리 내용 분석(2004. 1 - 9) (단위 : 건)

구분	계	신고처리내용						
		심의상정 (CSS등록)	상담 및 안내					
			소계	신고 재요청	관계기관 안내	차단 요청	자체 상담	기타
2004. 9	71,448	33,612	37,836	13,046	5,642	8,785	3,870	6,493

※ 신고처리 내용 분석은 2004.1부터 실시

■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 피해내용 분석(2001 - 2004. 9) (단위 : 건)

구분	계	피해내용				접수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스토킹	기타	상담	신고
2001	1,054	278(33)	204	22	550	-	1,054
2002	3,616	1,248(115)	224	53	2,091	442	3,174
2003	4,217	1,916(894)	557	95	1,649	3,216	1,001
2004. 9	2,992	1,636(702)	267	61	1,028	2,922	0
합계	11,879	5,078(1,764)	1,252	231	5,318	6,580	5,229

※ 2003. 10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성폭력 등에 대한 분쟁조정 기능강화를 위한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

■ 해외 음란·폭력정보 등급DB 구축(2001 - 2004. 9) (단위 : 건)

구분	등급DB 구축 건수
2001	119,914
2002	51,224
2003	39,035
최적화(2001~2003) 삭제	-65,364
2004. 9	22,206
합계	167,015

※ 1. 2001. 10 불건전정보 차단DB의 구축을 종료하고, 기존의 해외 불건전정보 차단 DB 총 131,700건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하여 109,010건을 등급DB로 전환함
2. 해외등급DB에 대한 최적화 작업(2001~2003.12)을 통하여 접속불능(폐쇄) 데이터 65,364건을 일괄 삭제하여 2004. 1월부터 누적건수 변경

■ 국내정보 자율등급표시(2001 - 2004. 9) (단위 : 건)

구분	자율등급표시 건수
2001	1,701
2002	3,255
2003	1,088
최적화(2001~2003) 삭제	-4,074
2004. 9	304
합계	2,274

※ 1. 2001. 9. 24부터 국내 자율등급표시 웹서비스(www.safenet.ne.kr)를 제공하고 있음
2. 국내 자율등급표시 정보에 대한 최적화 작업(2001. 9~2003. 12)을 통하여 자율등급표시 취소정보 4,074건을 삭제변경하여 2004. 1월부터 누적건수 변경

■ 차단 관련 S/W 보급 및 다운로드(2001 - 2004. 9) (단위 : 건)

구분	음란스팸차단S/W (음란스팸잡이)	내용선별S/W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S/W
2001	-	-	45,441
2002	-	95,499	126,386
2003	249,778	305,624	99,594
2004. 9	581,848	380,784	20,537
합계	831,626	781,907	291,958

※ 1. 음란스팸차단S/W(음란스팸잡이) : 2003. 11. 7부터 음란스팸잡이 전용 홈페이지에서 무료다운로드 제공
2. 내용선별S/W : 2001. 12월 기술개발 완료, 현재 35개 기술이전업체에서 다양한 내용선별S/W 제품 개발 및 출시 중
3.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S/W(youth.rat) : 2001. 10. 11부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제공

■ 정보통신윤리 교육 실시 현황(1997 - 2004. 9) (단위 : 명)

구분	계	청소년	학부모	교사	사업자	기타
1997	160	-	-	160	-	-
1998	850	-	550	300	-	-
1999	60	-	60	-	-	-
2000	950	900	-	-	-	50
2001	2,978	2,483	125	290	50	30
2002	13,045	9,766	2,349	749	71	110
2003	37,860	35,934	482	1,178	87	179
2004. 9	47,681	44,443	1,420	13	65	1,740
합계	103,584	93,526	4,986	2,690	273	2,109

※ 기타는 교육대상이 청소년과 학부모 등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한 경우임

■ 청소년권장사이트 선정 및 선정취소 현황(2000-2004. 9) (단위 : 개)

구분	유효 사이트	선정	선정취소
2000	180	180	-
2001	420	240	-
2002	441	179	158
2003	458	119	102
2004. 9	497	90	51

※ 1. 청소년권장사이트제도는 2000. 4 부터 실시하였음
2. 2002. 12부터 사후관리실사를 통하여 기 선정된 사이트에 대한 선정취소를 실시

■ 연도별 인지방법별 심의 및 시정요구 실적(1995 - 2004. 9) (단위 : 건)

인지방법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9	합계
자체모니터링	심의	-	-	6,698	12,524	24,359	16,800	20,709	15,259	10,428	18,366	125,143
	시정요구	-	-	4,132	10,131	16,299	11,180	18,290	7,710	1,945	7,179	76,866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인터넷119)	심의	2,032	5,655	7,318	4,584	5,248	6,677	4,501	16,962	68,706	35,763	157,446
	시정요구	598	2,137	2,214	2,551	3,430	4,260	3,212	3,323	16,086	18,897	56,708

※ 1. 1995. 4 부터 1996. 12까지는 자체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음
2. 2002. 12. 2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존의 '불건전정보신고센터'를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로 명칭을 변경

IV. 맺는 말

이상으로 불법·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정보제공 내용과 유통실태를 고찰하여 보았다.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률이 급속히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인터넷의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상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 특히 음란정보의 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사

이머상의 불법음란정보는 정보제공사업자와 정보이용자 모두가 유통에 대한 자율정화노력 및 건전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결국은 건전하면서 깨끗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정보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인 국민 및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노력이 꾸준히 있어야 하고, 음란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단호한 결의와 실천까지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용자는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통신윤리의식으로 스스로를 중무장하여 음란 정보에 침취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 내 가정과 이웃을 보호하는 등 자정노력을 펼치는 것이 최선책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가정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때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실에 두어 부모와 자녀의 건전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와 직장 생활 등 모든 곳에서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형성 마인드가 요구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빌 1:9-10)”

<참고자료>

도나 라이스 휴스 지음/김재서 옮김, 사이버공간의 유희에서 우리 아이 지키기,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릭 워렌 지음/고성삼 옮김, 목적이 이끄는 삶, 도서출판 디모테, 2004.

오정현, 인터넷목회, 규장, 2001.

정충영, 사이버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겨자씨, 200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백서, 200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종합통계 2004.10.